

2025 국내 미술 유통업 해외진출 사업 국내 아트페어 해외개최 지원 공모 안내문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미술시장의 국제화 및 글로벌 프로모션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25 국내 미술 유통업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아트페어 해외개최 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I

공모요강

구분	내용			
공모명	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개최 지원			
지원대상	2025년 해외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내 유통사 및 단체			
지원규모	건당 최대 3억원 이내 * 지원금의 30% 자부담 의무편성			
지원내용	해외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항목	지원 세부내용	비고	
	장소대관료	- 아트페어 개최를 위한 장소 대관비 -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대관비 * 부대행사는 특별전시, 컨퍼런스에 한함	현금 거래 불가 * 반드시 외화송금 또는 카드결제	
	공간조성 용역비	- 아트페어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조성 설치철수비		
	홍보비	-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비 * 도록, 배너 등의 인쇄 제작비 지원 불가 국내 매체 광고비 지원 불가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5월 1일 ~ 12월 15일 내 해외에서 아트페어 개최가 확정되어 현지 작품 유통·판매가 가능한 유통사 및 단체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국화랑의 참여비율이 80% 이상			
사업기간	2025년 5월 1일 ~ 12월 15일			
선정방식	적격 및 지원금 심사(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공모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3월 7일(금) 16:00(한국시간)			
심사일정	2025년 3월 예정 ※변동될수 있음			
필수 제출서류	<p>①지원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p> <p>* 행정결격 : 필수제출서류 2종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행정결격으로 심의제외 과거 연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행정결격으로 심의제외</p>			

II

공모 신청 및 심사 안내

- 1) 공모 및 접수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3월 7일(금) 16:00 (한국시간)
- 2) 접수방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통해 접수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실 1670-9595
 - e-나라도움 사이트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필요
- 3)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구분	내용		
심사방식	서류 및 인터뷰 심사		
심사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심사기준	사업 실행	사업수행단체의 역량 및 실적	30%
	사업 목적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40%
	사업 성과	기대효과	30%

- 심사일정 : 3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해외진출팀
 - 유선전화 : 02.2098.2924
 - 이메일 : artfair.abroad@gokams.or.kr

주요사항

신청자격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4.10.31.개정)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지원 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및 전시장 임차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기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 부대비용 : 간담회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의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총 보조금(지원금)의 30% 자부담 및 증빙 필수, 자부담 예산편성항목은 보조금 지원항목과 동일함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작가 및 출품작 수 등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 단체에게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나라도움 교육(온라인-이론 1회 4시간, 오프라인-실습 2회 6시간) 수료증 제출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사례비(아티스트피)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전시 운영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

	<p>※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p> <p>*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필수 • 선정자 대상 사전워크숍 · 성과공유회 진행 시 참석 필수 •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일은 전시 운영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됨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검증 •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 • 지원 전시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 (제출된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www.k-artmarket.kr'에 게재될 수 있음) •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